

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사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43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학부장, 교무부학부장, 학생부학부장, 각 전공주임 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학부장, 부위원장은 교무부학부장이 된다.

③ 학부장은 학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회가 위임한 사항(「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교수회 규정」 별표)

2. 그 밖에 학부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」 제8조에 규정된 장학실무위원회를 겸한다.

제5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 중 중요내용을 교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 (2024. 3. 1.)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